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96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정준호·한준호·김기표

박희승 • 전진숙 • 신정훈

김영환 · 문대림 · 이개호

김남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사업을 운송사업, 운송가맹사업, 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 중 운송중개사업은 플랫폼을 통해이용자의 여객운송 수요를 택시 등 운송사업자에게 주선하는 서비스로 일반택시뿐만 아니라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도 참여함.

그런데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의 운송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운송가맹사업을 겸영하면서 해당 운송가맹사업자 소속 택시에 이른바 "콜몰아주기", "콜 차단"등 불공정 행위를 함에 따라 운송플랫폼 시장의공정한 경쟁기반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3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택시호출서비스업 독과점 문제 및 경쟁 촉진을 위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입법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

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플랫폼운송가맹사업자를 차별하거나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하여 중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0신설 등).

법률 제 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2에 제49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9조의20(불공정한 중개행위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공정한 여객운송 중개 질서를 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부당하게 운송사업자나 플랫폼가맹사업자를 차별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
 - 2. 중개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를 우선 하여 여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
 - 3. 그 밖에 공정한 중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행위
-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의7. 제49조의20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9조의20(불공정한 중개행위의
	<u>금지)</u> 「 <u>독점규제 및 공정거래</u>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장지
	배적지위를 가진 플랫폼운송중
	개사업자는 공정한 여객운송
	중개 질서를 해할 수 있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1. 부당하게 운송사업자나 플랫
	폼가맹사업자를 차별하여 여
	객운송을 중개하는 행위
	2. 중개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 또는 계열회사
	를 우선하여 여객운송을 중개
	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정한 중개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94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십년 (원레기 기수)
│ 1. ~ 3의6. (생 략)	1. ~ 3의6.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7. 제49조의20을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